

#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위한

## 2019년 의사배상책임보험 주요변경내역



주간  
보험사  
변경

### ○ 현대해상으로 주간보험사가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 보험료 입금시에 보험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관련 문의 (대리점): 엠피에스

Tel : 02-594-1870 / Fax : 02-6280-7588



프로그램

### ○ 보험료 인하

- 보통약관 보험료가 **전년대비 약 5% 할인**되었습니다.

### ○ 특별약관 신설

- '의료사고 관련 가처분 신청 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었습니다.

### ○ 기본적인 틀은 전년과 동일

- 보통약관, 특별약관 보험조건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 보통약관 '**보험료 할인, 할증도 전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만기일 이전에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 만기일 이전에 해외 연수, 이직, 휴업 등의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내의 무사고확인서 첨부 조건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만기일 이후 재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만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소급담보일은 다시 가입하는 익일로 확정되며 소급담보일 이전의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위한 2019년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절차



## 1 가입설문서를 작성해주십시오.

- 보통약관 보험조건 및 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약관 가입을 원하시면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고 가입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동의서를 잘 살펴보고 서명 날인하셔서 보내주십시오.

## 2 작성하신 가입설문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 지정된 운영사 엠피에스로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보내주십시오.  
Tel : 02-594-1870 / Fax : 02-6280-7588  
E-mail : inmps@hanmail.net

## 3 가입신청서에 서명하신 후 엠피에스로 보내주십시오.

- 가입설문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확인한 후 가입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 계약내용과 보험료를 확인하시고 서명 후 위와 같이 보내주십시오.

## 4 보험료를 납부해주십시오.

- 보험료가 납입되어야 담보가 개시됩니다.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42890-71-110126** (예금주 : 현대해상화재보험)

### ※ 주의사항

- 입금시 반드시 **가입회원명과 면허번호**를 명기해주셔야 합니다.
- 카드 결제시 **가입피보험자와 신용카드의 소유자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와 카드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수납 처리가 불가합니다.)

## 만기일 이전에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 만기일 이전에 해외 연수, 이직, 휴업 등의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내의 무사고확인서 첨부 조건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만기일 이후 재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만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소급담보일은 다시 가입하는 익일로 확정되며 소급담보일 이전의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대한한의사협회

## 한의사를 위한 의사배상책임보험

###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



- 한방 시술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부작용)을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으로 제기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현대해상에 사고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현대해상에서 지정한 조사자가 파견되어 사고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 만일 수진자 측에서 시위 등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경호비용보장특약을 가입하셨으면 경호원이 파견될 수 있습니다.

#### 1. 보상하는 손해(배상청구기준)

- 동 보험은 보험증권(가입증명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증권(가입증명서)에 명시된 소급담보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 내에 배상청구가 될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했던 비용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했던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3. 아래의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수진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특별약관 등 선택보장의 가입을 통해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일반시설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 의원 및 병원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주차장은 제외)로 인한 배상책임 담보  
예)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낙상한 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보장

### 경호비용보장 특별약관

-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점거, 난동 및 부당한 보상강요에 대응하여 사건처리, 수습 또는 조정을 위해 필요시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경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상한도액: 2백만원(1청구당) / 4백만원(연간 총보상한도)

### 벌금보장 특별약관

- 의료행위의 수행 중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1청구당 / 연간총보상한도 2천만원

### 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진료 방해 및 난동 등으로 부득이 휴업하거나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해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한 때에는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연간 최대 15일한도 내에서 1일 5십만원의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  
- 휴업: 의료기관을 폐문한 상황에서 외래 진료를 휴진한 것

### 형사방어비용 보장 특별약관(1), (2) 중 선택

-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  
- 보상한도액: 5백만원 (단 특별약관 (2)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을 경우에도 형사방어비용을 보장합니다.)

###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 의료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상해손해와 재물손해를 보상  
- 보상한도액: 사망·후유장해 / 재물손해 1억원

###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보장 특별약관

- 의료행위의 결과로 환자가 사망하고 환자의 유족이 피보험자의 과실을 주장하여 의료 분쟁을 제기하여 의료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의 의료분쟁조정기 접수되거나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건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관습상 유족에게 지급한 조의금이나 위로금 또는 위자료(형사합의금)를 보상

### 의료사고 관련 가처분 신청비용 보장 특별약관

- 수진자 측의 시위, 협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비용 또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비용을 보상

## 손해분담특별약관 (Co-ins)

보험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초과금(손해배상금-자기부담금)의 일정한 비율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분담특별약관입니다.

현대해상(주)는 2014년도 2월부터 한의사를 위한 의사배상책임보험에 아래와 같이 손해분담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 아 래

손해분담율은 지급보험금에 따른 상이한 비율로 적용합니다

지급보험금	손해분담율
500만원 이하	10%
500만원 초과	15%
1000만원 초과	20%
2000만원 초과	25%
3000만원 초과	30%

\* 지급보험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 \* 적용예

자기부담금이 5십만원인 한의사를 위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배상책임금과 부대비용 합이 4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초과금액(3백5십만원)의 10%(상기표 참조)인 35만원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15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함.

#### \* 상이한 비율을 적용하는 이유

최근 3개년 동안 발생한 지급보험금 중에서 5백만원 이하인 경우가 약 83%로, 대부분의 사고가 500백만원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어 500만원 이하에서는 낮은 분담율(10%)을 적용하고 지급보험금의 크기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이 피보험자에게 유리함 (보통 분담율은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고 있고 의사배상책임보험은 20%가 대부분임) .

1. 보험계약 당사자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	성명		면허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 신규	병·의원명		주민등록번호		
□ 갱신 (재가입)	병·의원주소				소급담보일	
	병·의원전화번호				FAX	
	e-mail				휴대폰	

2.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보험효력은 입금일 당일 24:00시부터 발생합니다.>

1) 보험기간 : 2019년 03월 01일 (00:00) ~ 2020년 02월 29일 (24:00)

2) 보험료 : 보통약관(의료과실 배상책임 보장: 배상청구기준) 및 특별약관 보험료

가) 보통약관

① 의료과실 배상책임보장(기본담보) (선택조건에  체크하십시오) (한의사 1인당)

보상한도액		청구당 5천만원 / 연간 총 1억원		청구당 1억원 / 연간 총 2억원	
자기부담금 (1청구당)	5십만원	<input type="checkbox"/> A1	296,000원	<input type="checkbox"/> B1	334,000원
	1백만원	<input type="checkbox"/> A2	251,000원	<input type="checkbox"/> B2	281,000원
	2백만원	<input type="checkbox"/> A3	228,000원	<input type="checkbox"/> B3	258,000원

\*상기요율은 손해분담특별약관 (Co-ins)을 적용하는 조건입니다.

② 일반시설배상책임 보장(선택담보) (선택조건에  체크하십시오) (한의사 1인당)

선택	보상한도액	청구당 2백만원 / 연간 4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자기부담금 (1청구당) : 1십만원	27,000원

나) 특별약관(선택담보)

(선택조건에  체크하십시오) (한의사 1인당)

특별약관	보상한도액(1청구당/연간총보상한도)	선택	보험료(W)	자기부담금
경호비용 보장	2백만원 / 4백만원	<input type="checkbox"/>	54,000	1청구당 100,000원
벌금 보장	2천만원 / 2천만원	<input type="checkbox"/>	32,400	-
외래진료 휴업손해 보장	1일 50만원 / 최대 15일	<input type="checkbox"/>	157,500	-
형사방어비용 보장	I. 구속시 (5백만원 / 5백만원)	<input type="checkbox"/>	27,900	-
	II. 기소시 (5백만원 / 5백만원)	<input type="checkbox"/>	63,000	-
폭행 및 악의적 파괴행위 보장	사망·후유장해 (1억원 / 1억원)	<input type="checkbox"/>	36,000	-
	재물손해 (1억원 / 1억원)	<input type="checkbox"/>		
관습상의 비용 보장	5백만원 / 5백만원	<input type="checkbox"/>	85,500	-
의료사고관련 가처분 신청비용 보장	1백만원 / 1백만원	<input type="checkbox"/>	30,000	손해액의 20%

\*재계약인 경우 만기일 이전에 해외 연수, 이직, 휴업 등의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무사고확인서를 첨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만기일 이후 재계약일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급담보일을 유지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연간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신규 가입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담보일(최초보험가입일)은 신규가입 익일로 확정되어 기본보험료에서 일할로 산출된 보험료를 적용하지 만 변경된 소급담보일 때문에 신규 가입일 이전에 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사고이력고지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2016.02.01~2019.01.31) 종결 또는 사고접수건]

No	사고접수일	보험금	부대비용	종결일자	비고
1					
2					
3					

● 보험가입 및 상품에 관한 문의 : 현대해상 대리점 **엠피에스**

( Tel : 02-594-1870, FAX : 02-6280-7588 / 02-762-3340, 3364 )

※ 배상청구기준은 가입증명서에 명시된 소급보장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 내에 배상청구가 될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는 기준입니다.

#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계약자명:

계약자번호:

계약번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귀중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동의함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유지·관리(부할 및 갹신 포함), 서비스 만족도 조사, 보험금 등 지급·심사,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민원 처리 및 분쟁 대응, 적부 및 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보험모집질서의 유지,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 상담(당사 및 당사 설계사에 한함), 모집인 수당 수수료 확인, 금융거래 관련 업무(금융거래 신청, 자동이체 등)

###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음성정보), 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번호), 신용카드번호(소유자명, 소유자 번호, 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당사,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수집·관리하는 보험계약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진료기록 등),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소득 및 재산사항, 치과과사면허번호, 법률 및 국제협약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정보,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관련 정보

###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종료일\* 후 5년까지(단, (금융)거래종료일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 (금융)거래종료일이란 당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보험, 연금, 대출 등)의 취소, 철회, 해지, 만기(소멸시효 포함) 및 보험금 지급(소멸시효 포함)이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 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개발원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유지·관리(부할 및 갹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조사 포함), 고액·다수 계약자, 피보험자 조회, 모집인 수당 수수료 확인

###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수집·관리하는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
- 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 □ 조회 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제공 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종료일\* 후 5년까지(단, (금융)거래종료일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 (금융)거래종료일이란 당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보험, 연금, 대출 등)의 취소, 철회, 해지, 만기(소멸시효 포함) 및 보험금 지급(소멸시효 포함)이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계약자명: \_\_\_\_\_ 계약자번호: \_\_\_\_\_ 계약번호: \_\_\_\_\_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 (위탁사업자 포함)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등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대리점 등), 보험증개사,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터, 위탁 조사업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진단업체, 계약적부조사업체 등)
- 대한한의사협회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CMS 출금이체를 통한 보험료 수납
  -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공동인수, 금융거래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 업무수탁자 등 : 본 계약의 체결·이행 관련 위탁업무 수행,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업무, 모집인 수당 수수료 확인, 사고처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질병·상해정보 처리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피보험자	서명(날인)	면허번호	
------	--------	------	--

※ 동의하시는 경우, 계약관계자가 각각 서명하여 주시고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이 서명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각자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 중 일방이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계약자란에만 서명하여도 무방합니다.

